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4
----------	-----

2018년 9월 6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8월 20일, 김기대 의원(찬성자 15명)
-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8년 9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대 의원)

가. 제안이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 배상, 정보공개요청 증가 등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피해지원 업무의 법제화 및 소송 전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통한 일상생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피해자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화재피해자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민간협력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제조물 결함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2) 서울특별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3)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으로 분류함(안 제5조)
- 4)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5)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대상을 정함(안 제7조)
- 6)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비상설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7) 분쟁조정의 신청과 합의권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조정위원회 개최 기한과 연장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8)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9) 분쟁조정 내용 수락을 통한 조정 성립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10)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다양한 화재발생 원인과 기술적·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피해당사자가 그 원인을 밝혀내어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

[표 1] 조례안 주요골자

조 문 별	주요 골자
안 제2조 (정의)	화재피해자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민간협력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제조물 결함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화재피해자 지원)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으로 분류함
안 제6조 (민간협력 지원)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대상을 정함
안 제8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비상설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과 합의권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조정위원회 개최 기한과 연장기간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조정 거부 및 중지)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조정 성립)	분쟁조정 내용 수락을 통한 조정 성립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관계기관의 협조)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화재 발생 및 화재 피해자 지원 현황

- 최근 4년간 서울시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555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136명, 부상자 873명,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는 513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있음.([표 2]참조)

[표 2] 최근 4년간 서울시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연도별	구분	화재건수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21,555	1,009	136	873	51,330
2015년		5,921	249	27	222	14,337
2016년		6,443	276	40	236	14,122
2017년		5,978	283	37	246	15,329
2018년 6월		3,213	201	32	169	7,542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로의 조기복귀를 위해 자체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등의 물적 지원과 화재피해시민 재난심리치료 지원,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등의 심리적·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여기서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1)’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해 금년 6월까지 총 272세대, 5억 45백만원을 지원하였고,([표 3]참조)

1) ※지원대상: 저소득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자녀(3명이상)세대,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저소득가정
 ※지원방법: 소방서 자체복구 또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합동복구(수리)
 ※지원금액: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 기금 활용
 → 소방재난본부&사회복지협의회&S-OIL(주)간 3자 협약(2010.3.17) 체결 조성기금

[표 3]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 실적 (2018.6.30까지)

구분	계	2018년 (6.30기준)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추진 실적	272세대 (93세대)	15세대 (2세대)	30세대 (3세대)	35세대 (12세대)	19세대 (9세대)	25세대 (13세대)	35세대 (9세대)	28세대 (8세대)	31세대 (12세대)	33세대 (9세대)	16세대 (12세대)	5세대 (4세대)
지원 금액	5억45백만원	17백만원	23백만원	73백만원	56백만원	89백만원	51백만원	54백만원	72백만원	43백만원	55백만원	12백만원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화재피해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²⁾’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총 73세대, 8,6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표 4]참조), ‘화상피해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2017.7월부터 지원을 시작해 총 2명의 청소년을 지원한 실적이 있음.

[표 4] 화재피해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실적 (2018.6.30까지)

구분	계	2018년 (6.30기준)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추진실적	73세대	10세대	24세대	17세대	20세대	2세대
지원금액	8,610만원	1,300만원	3,120만원	2,210만원	1,880만원	100만원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또한, 2008년부터 서울재난심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화재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신경정신과 치료前 단계)³⁾를 실시하여 총 2,651명을 지원하였으며([표 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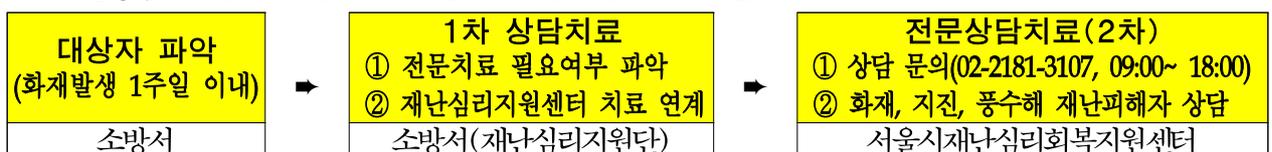
2) ※지원절차: 소방서 추천 ⇒ 현장실사 ⇒ 생계지원비(130만원 이내) 지원

※지원방법: 소방재난본부 & 한화손해보험(전국재해구호협회)

☞ **“한화손해보험협회”** - 서울소방재난본부와 2014.6.10. 협약체결 운영 실시

- 화재피해 재난위기가정을 위한 Safe Together House 활동으로 재난 발생 시 위험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 조손 가족 등 세대 당 1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역 : 130만원(위로금 30만원, 이불주방용품 20만원, 필요물품 또는 도배·장판 80만원)

3) ※지원방법: 소방서 재난심리지원단 및 서울재난심리지원센터 연계 치료



제조물결함 화재피해보상과 관련해 제조사와 피해자 간 피해보상 안내 및 조정은 2011년부터 458건에 이르고 있음.([표 6]참조)

[표 5] 화재피해시민 재난심리치료 지원 실적 (2018.6.30까지)

구 분	계 (명)	2018년 (6.30기준)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지원실적	2,651	375	640	613	233	359	202	87	142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표 6] 제조물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 실적 (2018.6.30까지)

구 분	계 (건)	2018년 (6.30기준)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지원실적	458	83	160	126	36	12	25	11	5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그러나 이러한 지원실적은 관련 규정이나 근거 없이 소방서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지원하거나 혹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한화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어 협약이 종료 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자 중 일상복귀가 어려운 저소득층 화재피해자들의 안정적인 복귀 지원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에서 피해당사자가 기술적·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불의의 화재피해자들을 구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음.

■ 주요골자별 의견

가. 목적 (안 제1조)

- 안 제1조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지원 또는 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피해자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음.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화재피해자’, ‘민간협력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제조물 결함’ 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화재피해자’의 경우 그 범위를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소득층 화재피해자’는 화재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으로서 서장이 정하는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례 해석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다. 화재피해자 지원 (안 제5조)

- 안 제5조는,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의 범위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 지원 범위는 화재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그 밖에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과 제조물 결함에 따른 분쟁조정의 경우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지원분야로 사료됨.

라. 민간협력 지원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에게 화재피해자의 원활한 자활지원을 위해 관련 민간기업·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그 동안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화재피해자 지원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

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임.

마.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의결기구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심의·조정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심의·조정 항목으로는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발화지점 및 원인 그리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발생 여부 등 화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없이는 피해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원활한 분쟁조정을 이끌어 내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피해당사자 간 합의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안 제10조)

- 안 제8조는,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토록 규정하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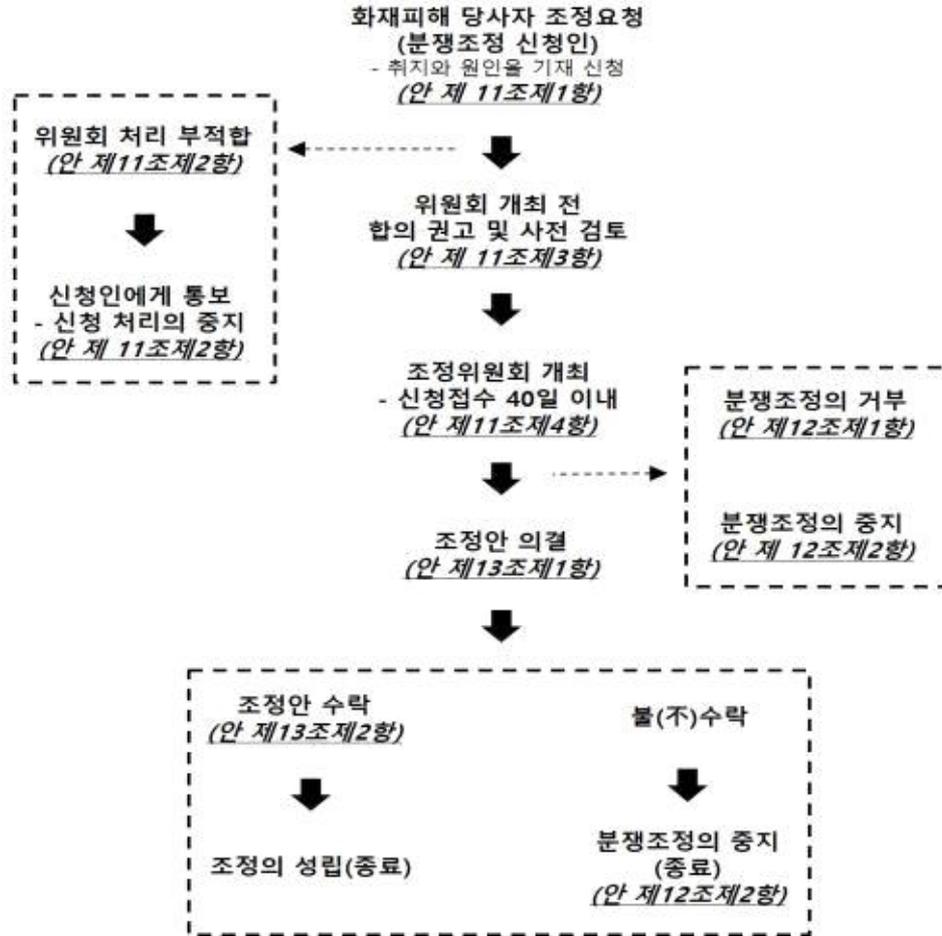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고 있음.

- 이 때 위원의 자격은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품의 설계·생산·시험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와 관련된 조사·수사·연구 및 감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으로 이해되며, 소송 전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안 제9조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혹은 당사자가 친족이거나 사전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토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음.

라.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안 제11조~안 13조)

- 안 제11조는,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시장은 4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서 개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 전에 화재원인 분석 등의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판단됨.

- 다음으로, 안 제12조는 성질상 조정에 맞지 않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부여하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종결의 의미로 조정을 중지할 수 있는 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음.
- 안 제13조는, 조정안을 의결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그 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만일 분쟁당사자가 의결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안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 조정은 중지되기 때문에 이 둘 두 경우 모두 위원회 조정안을 통보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조정 은 종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위원회 조정안이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관계로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조정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심의·조정 과정에서 분쟁당사자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그림 1] 화재피해분쟁 처리 절차도

마.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14조~안 15조)

- 안 제14조는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사안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요청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5조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분석 및 감정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 이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이 객관적인 검증자료와 충분한 진술, 그리고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부여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이라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지원 또는 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자”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민간협력 지원”이란 민간기업·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소득층 화재피해자”란 화재피해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4. “제조물 결함”이란 제조물이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소방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피해자 지원) ①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2.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3.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4.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5.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자는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화재발생 장소의 관할소방서장(이하 “관할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간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원활한 자활지원을 위해 관련 민간기업·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화재피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2.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지방소방정부터 지방소방정감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5.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품의 설계·생산 또는 시험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와 관련된 조사·수사·연구 및 감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밖에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사전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조정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

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조정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분쟁조정 신청) ① 화재피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신청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외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타법에 의한 조정·재정·중재 등이 진행될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이

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출석 또는 서면 진술을 요청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분석 및 감정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조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안전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전 합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조서

[별지 제6호 서식]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화재 피해 분쟁 조정 전 합의서

건 명				
신청인	성 명	(서명)	연락처	
	주 소			
당사자	성 명	(서명)	연락처	
	주 소			
합 의 내 용				
합의일				
<p>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합의권고에 따라 신청인 및 당사자가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장</p>				

<별지 제5호 서식>

화재 피해분쟁조정 조서

신청인	성 명	(서명)	연락처	
	주 소			
당사자	성 명	(서명)	연락처	
	주 소			
조정위원회	개최일		장 소	
	위원장	(서명)	연락처	
	위 원			
건 명				
분쟁 내용				
조정 내용				
처리 결과				
※ 붙임자료 ○ 회의록, 사진, 영상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20일

발 의 자 : 김기대 의원(1명)

찬 성 자 : 임종국, 박순규, 이현찬, 김희걸,
이동현, 박기열, 박상구, 봉양순,
김혜련, 신정호, 노식래, 정지권,
김제리, 유 용, 최기찬 의원(15명)

1. 제안이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 배상, 정보공개요청 증가 등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피해지원 업무의 법제화 및 소송 전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통한 일상생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피해자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피해자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민간협력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제조물 결함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으로 분류함(안 제5조)
- 라.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 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대상을 정함(안 제7조)
- 바.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비상설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분쟁조정의 신청과 합의권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조정위원회 개최 기한과 연장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자. 분쟁조정 내용 수락을 통한 조정 성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차.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지원 또는 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자”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민간협력 지원”이란 민간기업·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소득층 화재피해자”란 화재피해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4. “제조물 결함”이란 제조물이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

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소방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피해자 지원) ①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2.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3.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4.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5.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자는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화재발생 장소의 관할소방서장(이하 “관할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간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원활한 자활지원을 위해 관련 민간기업·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화재피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2.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지방소방정부터 지방소방정감에 상당하는 소방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5.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품의 설계·생산 또는 시험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와 관련된 조사·수사·연구 및 감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밖에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사전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조정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조정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분쟁조정 신청)** ① 화재피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신청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외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타법에 의한 조정·재정·중재 등이 진행될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출석 또는 서면 진술을 요청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분석 및 감정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조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안전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전 합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화재피해분쟁조정 조서

[별지 제6호 서식] 화재피해자 지원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화재 피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지원 신청 내용	분류	<input type="checkbox"/> 화재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input type="checkbox"/>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input type="checkbox"/>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input type="checkbox"/>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건명					
	신청내용 (요구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②항에 의거하여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는 원활한 피해지원(분쟁조정)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피해지원(분쟁조정)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별지 제4호 서식>

화재 피해 분쟁 조정 전 합의서

건 명				
신청인	성 명	(서명)	연락처	
	주 소			
당사자	성 명	(서명)	연락처	
	주 소			
합 의 내 용				
합의일				
<p>화재 피해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합의권고에 따라 신청인 및 당사자가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장</p>				

<별지 제5호 서식>

화재 피해 분쟁 조정 조서

신청인	성 명	(서명)	연락처	
	주 소			
당사자	성 명	(서명)	연락처	
	주 소			
조정위원회	개최일		장 소	
	위원장	(서명)	연락처	
	위 원			
건 명				
분쟁 내용				
조정 내용				
처리 결과				
※ 붙임자료 ○ 회의록, 사진, 영상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화재피해자 지원)에서 화재피해자의 안정적 재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5년간 **2억 7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55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저소득가정 복구 지원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235,000
	위원회 운영	7,600	7,600	7,600	7,600	7,600	38,000
	소계(b)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273,000
□ 총 비용(b-a)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273,000

다. 전제

- 안 제5조에서 화재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제6조에서 민간협력을 통해 협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제 소방재난본부가 다양한 민간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함(현황자료 아래 붙임). 다만,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의 경우는 피해복구비 중 (단순)지원 세대의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

- 피해복구비 지원의 경우, 2008년~2018년 추진실적 272세대 중 지원이 이루어진 9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단순 지원)는 93세대(기금 지원) 평균 지원액의 1/2배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저소득가정의 피해 규모는 별도의 통계가 없어 지원 사례로 한정함
- 민간 협업 현황자료와 필요 단가 등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회의건수 증가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라. 저소득층 화재 피해복구비 지원(안 제5조제1항제2호)

- (단순)지원 세대의 추가 필요비용(연간)
 - 연간 (단순)지원 회수 : 16.3세대
= (272세대 - 93세대) ÷ 11년
 - (단순)지원 세대의 복구지원 규모 : 2.9백만원
= 5억 45백만원/93세대 × 50%
 - 추가 필요비용 규모 : 47백만원/년
= 16.3세대 × 2.9백만원

마. 위원회 회의 비용(안 제7조)

- 연간 회의 개최 수 : 8회 (2017년 서울시 화재 건수 중 연소피해 발생 화재 및 제조물 결함 피해보상 지원 화재의 평균비율 약 7%)
- 위원 수당 : 750,000원 (= 150,000원 × 5명/회)
- 회의 준비 비용 : 200,000원/회
- 연간 비용 : 7,600,000원
= 750,000원 × 8회 + 200,000원 × 8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

[붙임] 소방재난본부 제공 민간 협업 현황 등

1.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자녀(3명이상) 세대,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저소득가정

○ 지원방법 : 소방서 자체복구 또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합동복구(수리)

○ 지원금액 :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 기금 활용

▷ 소방재난본부&사회복지협의회&S-OIL(주)간 3자 협약(2010.3.17) 체결 조성기금

○ 화재피해복구 지원 실적 : 2018년(6.30.현재) **2세대, 17백만 원** () : S-OIL(주) 후원

구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추진 실적	272세대 (93세대)	15세대 (2세대)	30세대 (3세대)	35세대 (12세대)	19세대 (9세대)	25세대 (13세대)	35세대 (9세대)	28세대 (8세대)	31세대 (12세대)	33세대 (9세대)	16세대 (12세대)	5세대 (4세대)
지원 금액	5억45백만원	17백만원	23백만원	73백만원	56백만원	89백만원	51백만원	54백만원	72백만원	43백만원	55백만원	12백만원

○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기금 운용현황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S-OIL)

▷ 총 모금액 : **6억 53백만 원** / 지원금액 : **5억 45백만 원** / 가용금액 : **1억 8백만 원**

☞ '17년 1억원 (S-Oil), '15년 5천만원(S-Oil), '13년 1억원 (S-Oil), '12년 5천만원 (S-Oil), '11년 1억 7백만원 (S-Oil 등), '10년 1억 13백만원 (S-Oil 등), '09년 35백만원(포스코건설), '08년 98백만원(소방및 의소대원)

○ 기금 활용 화재피해복구 지원 대상 화재피해금액 : 93세대 **7억250만 원**

○ 기금 활용 화재피해복구 한도액 : 1세대당 **840만원**

(현 거주지에서 자활이 가능하도록 도배, 장판, 필수가전 등 한도액 내에서 협력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금액 결정)

2. 화재피해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 지원절차 : 소방서 추천 ⇒ 현장실사 ⇒ 생계지원비(1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방법 : 소방재난본부 & 한화손해보험(전국재해구호협회)

☞ **“한화손해보험협회”** - 서울소방재난본부와 2014.6.10. 협약체결 운영 실시

- 화재피해 재난위기가정을 위한 Safe Together House 활동으로 재난 발생 시 위험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 조손 가족 등 세대 당 1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역 : 130만원(위로금 30만원, 이불 주방용품 20만원, 필요물품(OR 도배·장판) 80만원

○ 지원실적 : 2018년(6.30.현재) **10세대 1,300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추진실적	73세대	10세대	24세대	17세대	20세대	2세대
지원금액	8,610만원	1,300만원	3,120만원	2,210만원	1,880만원	100만원

3. 화상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사업명 : 서울시 화상 피해자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 기간 : 2017. 7월 ~ 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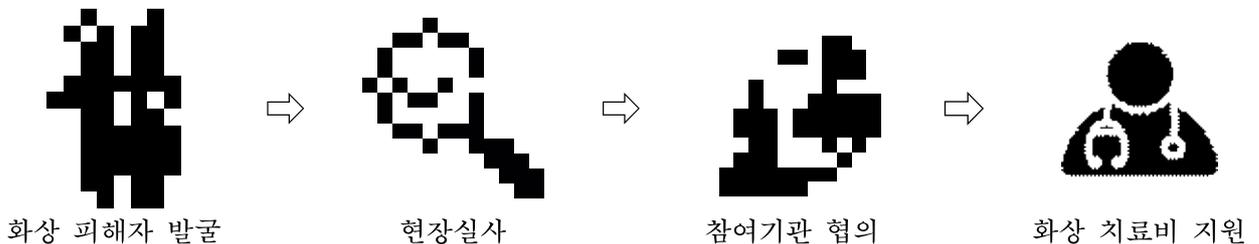
○ 대상 : 화재로 화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연 4인)

○ 지원내용 : 1인당 치료비 등 최대 1,000만원

- 입원 치료비, 외래 및 피해재활치료비, 보습제 및 약품

○ 참여기관 : KB손해보험, 한강수병원, 전국재해구호협회, 서울소방재난본부

○ 지원절차



○ 추진실적 : 청소년 2명 심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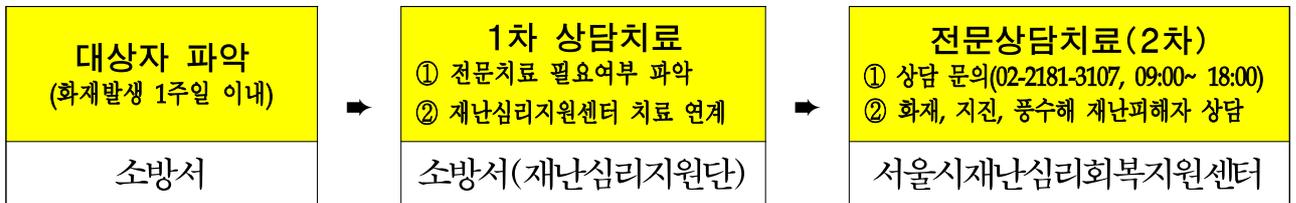
【어린이 ⇒ 청소년('18.3월) 확대 ⇒ 성인('18.6월) 확대】

4. 화재피해시민 재난심리치료 지원

○ 지원대상 : 화재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시민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치료 지원(신경정신과 치료 前 단계)

○ 지원방법 : 소방서 재난심리지원단 및 서울재난심리지원센터 연계 치료



○ 상담실적 : **2,651명** (소방서 자체 1,565, 2차 연계 1,086)

▷ 2018년(6.30.현재) : **총 375명**(1차 소방서 210, 2차 대한적십자사 165)

▷ 6년간('11~'17년) : 2,276명('17년640, '16년613, '15년233, '14년359, '13년202, '12년87, '11년142)

5.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 지원방법 : 제조사 ⇔ 피해자 간 피해보상 안내 및 조정

☞ 제조물 화재 발생 시 증거물 감정 등을 통한 제품 발화 증명

○ 보상내용 : 현물교환, 현금, 무상 수리, 제조물책임법 보험처리 등

○ 지원실적 : 458건('18.6.30)

구 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지원실적	458	83	160	126	36	12	25	11	5

6. 화재분쟁 및 예상 조정위원회 운영

○ 화재로 인한 주요 분쟁 : 연소피해 대상에 대한 보상관계 등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판정 관련 분쟁, 제조사·피해자의 보상관계 등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 화재 분쟁

○ 조정위원회 예상 운영건수 : 연소피해 발생 화재 및 제조물 결함 피해보상 지원 화재의 약 7%인 연간 약 8건

○ 화재로 인한 주요 분쟁(2017년)

- 발화지점 및 원인 판정 : 화재 5,978건 중 연소피해 화재 90건(1.5%)

- 제조물 결함 화재 : 제조물 피해보상 지원 160건 중 20건(12.5%)

○ 2017년 화재로 인한 주요 분쟁 사례(제조물 및 발화지점 판정)

연번	화재일시	대 상	분류	분쟁내용	처리결과	비고
1	'17.01.16. 07:15	○○아트빌 501호	발화원인 (제조물)	피해보상 관련 발화원인 변경 요청 (미상⇒리튬배터리 발화)	'17.04.06. 화재 제조사 (결과 통보)	
2	'17.04.22. 14:44	○○하우스 205호	피해보상 (제조물)	보일러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와 소방서 화재조사보고서의 상이한 결과에 따른 피해보상 조정	'17.07.25. 제조사 관계자 소방본부 회의 (민사소송 안내)	
3	'17.06.16. 18:14	○○대학교	피해보상 (제조물)	제조물(ACB차단기) 결함에 의한 화재 여부 및 피해보상 조정	'17.07.05. 제조사, 피해자 참석 소방본부 감정 (피해보상 합의)	
4	'17.08.16. 17:10	○○주택 2층	피해보상 (제조물)	ADT캡스 : 1,000만원 한도 보상 피해자 : 1,800만원 요구	민사소송 안내	
5	'17.11.18. 06:42	○○민자역사	발화지점 판정	발화지점 변경요청 (미상⇒214호)	다수 민원제기 (소송 안내)	
6	'17.12.04. 18:06	○○○○APT	발화지점 판정	발화지점 변경요청 (차량⇒APT)	화재 제조사 (결과 통보)	

○ 예상 소요예산 : 150,000원 * 5명 * 8건 = 6,000천원